## KOSHA GUIDE

C - 91 - 2015

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.

- (9) 가설전기의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10) 꽂음접속기, 전선 등 전기용품은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고 전기용량을 초과하는 등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(11)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2) 흡연장소, 난로 설치장소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.
- (13) 면화류, 나무 및 종이 부스러기, 대팻밥 및 톱밥 등 가연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당일 작업이 완료된 즉시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가연물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거나 건축물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(14) 사업주는 화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,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내용을 적합하게 구성하여 실시 함으로써 비상사태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.
- (15) 관리감독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  - (가) 화재 발생 상황 보고·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
  - (나) 근로자의 대피유도에 관한 사항
  - (다) 현장의 통제와 화재의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
  - (라) 화재발생 시 임무, 화재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
  - (마)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
  - (바)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